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340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2
2.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 적용 기한 연장 및 한도 확대	7
3.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11

I. 개요

1. 어기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1434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어기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1. 18.

(3) 회 부 일 : 2025. 11. 19.

나. 제안이유

현행법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면제 등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조세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수산부문의 경우 기후변화·이상기후 및 고수온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불규칙해지고 있으며, 종자·전기료 등 생산비의 급등으로 농어가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는 등 농어가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올해로 만료기한이 도래하는 농어업분야 세제 지원규정 기간연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특히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등 면제의 경우, 자가발전 도서에 대한 전력공급은 저원가 대용량 설비의 운영이 불가능하

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곤란하고 시설투자비와 공급원가는 높은 반면, 주민의 소득 수준이 낮아 수익자 부담원칙을 사용할 경우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도서지역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 차원에서 전기를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이 필요함.

이에 농림어업 분야 및 도서지역민 지원을 위하여 조세특례 중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것을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69조의3).

나.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함(안 제71조).

다.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의 면제에 대한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3년간 연장함(안 106조제1항 및 제111조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정안
☐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9조의3) ○ 대상 -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거나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 일정 소득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2028년 12월 31일(여기구의원안)

☐ 개정안은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¹⁾에서는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양식업 등 직접 어업에 사용²⁾한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어업용 토지등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어업용 토지등이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해당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어업에 사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같은 법 시행령에 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³⁾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각 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동 조세특례의 감면실적은 2024년 24억원이고, 20245은 약 11억원, 2026년은 약 12억원으로 전망하고 있음.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실적 및 전망]

(단위: 억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
어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24	25	24	11	12

* 2025년과 2026년은 전망치임

자료: 각 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른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이하 이 조에서 “양식등”이라 한다)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 어업용 토지등에서 양식등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의3(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③ 법 제69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용 토지등”이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양식등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에 있는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어업용 토지등으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어업용 토지등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어업용 토지등.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참고로, 2024년 양식어업가구는 1만 1,276호로 2019년 대비 80.3%, 2024년 양식어가인구는 2만 5,024명으로 2019년 대비 71.2%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9-2024년 어업가구 및 어가인구 현황]

항목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어업가구 (호)		50,909	43,149	43,327	42,536	41,775	40,890
어가인구 (명)		113,898	97,062	93,798	90,805	87,115	83,963
	양식어업가구(호)	15,292	10,335	11,228	11,174	10,938	11,276
	양식어가인구(명)	35,136	25,205	26,456	25,829	24,337	25,024

* 자료: 통계청(농림어업조사 중 「어업형태별 어가, 어가인구」)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측면이 있음.
- 첫째, 동 조세특례는 육상 양식어업인이 직접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어업인의 경영 지원과 농업인과의 형평성 제고, 어촌의 고령화 방지 및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에도모하려는 취지임.
- 또한, 어업용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양식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둘째, 동 조세특례와는 달리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⁴⁾ 및 자경산지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

양도세 감면⁵⁾의 경우에는 별도의 일몰기한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다른 조세특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는 통상 2년에서 3년의 일몰 규정을 두어 적용기한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시적 지원을 통해 조세특례의 남용을 막고, 정책효과 및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어업 산업구조의 특수성과 변화 가능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정책적 결정으로 볼 수 있음

2018년 1월 1일부터(2017년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동 조세특례가 시행되었으며, 이후 2~3년 단위로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특례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 다만, 지난 2025년 정기회에서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38)」의 의결되었음.

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영한 산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산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산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한다.

2.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 적용 기한 연장 및 한도 확대

현 행	개정안
☐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제71조) ☐ 영농에 종사하는 거주자가 농지·어선·어업권·축사용지 등을 직계비속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 ☐ 적용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 2028년 12월 31일(여기구의원안)

☐ 개정안은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동 증여세의 감면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임.

☐ 동 특례제도는 부모가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조기이전 하도록 함으로써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고 농가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1986년에 도입된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6)에서는 자경농민 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민 등이 영농에 종사하

6)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염전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는 직계비속에게 농지, 초지, 어업용 토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1억원 (5년간 증여세액 합계 기준)을 한도로⁷⁾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동 특례제도가 적용된 감면세액은 2021년도 773억원, 2024년도 476억원의 실적치를 기록하였고, 2026년도에는 543억원 수준의 조세지출이 전망되고 있음.

[연도별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모]

(단위: 억원)

연도	2021(실적)	2022(실적)	2023(실적)	2024(실적)	2025(전망)	2026(전망)
감면액	773	712	654	476	506	543

자료: 각 연도 조세지출예산서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조세감면 규모는 감소하고 있으나 경자유전의 원칙, 농·어민 이익보호라는 정책적 측면에서 제도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러한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으로 자경농민 등이 농지등을 상속하는 경우 적용되는 영농상속공제 제도⁸⁾는 일몰기한을 정하지 않고, 상속세제의 기본 공제제도로써 계속 운영되고 있음.

7)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④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둘째,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경자유전 원칙 유지 측면에서 증여세 감면 혜택의 지속 적용을 통해 농어업 인력의 세대교체 촉진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024년 농가 경영주는 연령별로 70세 이상이 49만 5천 가구(전체 농가의 50.8%)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33만 2천 가구(33.1%), 50대는 12만 5천 가구(12.9%) 순으로, 전년대비 70세 이상 경영주는 증가(+3.6%)하였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감소하였음.

[2024년 경영주 연령별 농가]

(단위: 천 가구, %)

구 분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4	974 (100.0)	5 (0.5)	27 (2.8)	125 (12.9)	322 (33.1)	495 (50.8)
증 감	-25.3	-0.8	-5.7	-16.1	-20.1	17.4
증감률	-2.5	-15.4	-17.3	-11.4	-5.9	3.6

주: 증감, 증감률은 전년 대비 수치임.

자료: 통계청,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24년 어가 경영주 또한 70세 이상이 1만 7천 가구(전체 어가의 41.9%)로 가장 많았고, 60대는 1만 5천 가구(37.2%), 50대는 6천 가구(13.8%) 순으로, 전년대비 70세 이상(+7.4%) 경영주는 증가하였으나 나머지는 감소하였음.

[2024년 경영주 연령별 어가]

(단위: 천 가구, %)

구 분	계	40세 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이상
2024	40.9 (100.0)	0.4 (1.0)	2.5 (6.1)	5.7 (13.8)	15.2 (37.2)	17.1 (41.9)
증 감	-0.9	-0.1	-0.2	-0.7	-1.1	1.2
증감률	-2.1	-25.0	-6.7	-10.7	-6.7	7.4

주: 증감, 증감률은 전년 대비 수치임.

자료: 통계청, 「202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 다만, 지난 2025년 정기회에서 동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4738)」이 의결되었음.

3.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제106조제1항) ○ 면제대상 - 전기사업자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제1호)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u>2028년 12월 31일(여기구의원안)</u> - <u>2030년 12월 31일(이만회의원안)</u>
☐ 개별소비세 면제(제111조제1항) ○ 면제대상 - 전기사업자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제2호) ○ 적용기한 - <u>2026년 12월 31일</u>	☐ 적용기한 연장 ○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연장 - <u>2028년 12월 31일(여기구의원안)</u> - <u>2030년 12월 31일(이만회의원안)</u> ☐ 부 칙 ○ 시행일 - <u>2026년 1월 1일(여기구의원안)</u> - <u>2027년 1월 1일(이만회의원안)</u>

* 여기구의원안 2025. 11. 18. 발의(의안번호 14340), 이만회의원안 2026. 1. 23. 발의(의안번호 16270)

☐ 개정안은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도서지방의 자가발전 비용을 경감하고 도서지방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여건 조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동 특례제도는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가 처음 도입된 1977년에 마련된 것으로, 규정이 처음 신설될 당시에는 적용기한이 따로 없었으나 1998년 말 (구) 「조세감면규제법」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2003년 말까지 적용기한을 처음 설정하였고, 이후 기한이 계속 연장되어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입니다.

□ 최근 도서지방 자가발전에 사용된 석유량과 조세감면액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3,132kl, 2023년에는 3,695kl, 2024년에는 3,794kl의 석유류가 자가발전을 위하여 사용되었고, 그에 따른 조세감면액은 각각 15억 3,900만원, 17억 3,700만원, 18억 6,400만원임.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감면액 현황]

(단위: kl, 백만원)

연도별	유종	공급물량	조세감면액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세	계
2022년	경유	3,130	745	112	194	488	1,539
	휘발유	2	0.6	0.1	0.2	0.3	1.2
	계	3,132	746	112	194	488	1,540
2023년	경유	3,692	879	132	228	495	1,734
	휘발유	3	1.2	0.2	0.3	0.4	2.1
	계	3,695	880	132	229	496	1,737
2024년	경유	3,791	970	146	252	494	1,862
	휘발유	3	1.1	0.2	0.3	0.1	1.9
	계	3,794	971	146	253	494	1,864

자료: 재정경제부

한편,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자가발전시설이 설치된 면세유 공급 대상 도서지방은 2024년 기준 총 31개 지역임.

[2024년도 지역별 도서지방 자가발전시설 공급 현황]

지역	자가발전 도서지역 수	자가발전 도서지역명
경남	5	지심도, 와도, 국도, 수도, 소매물도
인천	3	지도, 굴업도, 백아도
전남	18	하태도, 장도, 만재도, 상태도, 우이도, 금죽도, 각이도, 소각시도, 안마도, 모항도, 소늬도, 대늬도, 맹골도, 서거차도, 외병도, 광대도, 가사도, 삼마도
전북	2	관리도, 방축도
제주	2	추포도, 횡간도
충남	1	죽도
계	31	

자료: 수협중앙회

□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육지에 비해 전기의 공급이 어려운 도서지방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도서지방의 생활 여건은 육지와 비교했을 때 여러 측면에서 열악하며, 특히 전기 공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가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서지방 거주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면세유 제도와 같은 조세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둘째, 현재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시설 설치·운영비용 등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⁹⁾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석유류에 대한

9)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공사비의 재원 등)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전기를 공급하려는 지역의 배전시설 공사에 드는 비용과 자가발전시설공사 및 개체공사(改替工事)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충당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면세가 중단될 경우 세수는 증가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연료비 부담 증가로 인해 자가발전시설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 도서주민의 이용상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발전시설 관리·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시·군)의 재정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현재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제도 외에도 도서지방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세·재정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임.

조세정책으로는 「소득세법」에 따른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등(제12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제70조·제87조의2·제88조의5),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제106조의2) 등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농·축산·임·어업 분야 주요 국세감면제도]

근 거		내 용
「소득세법」 제12조		· 작물재배업소득 비과세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87조의2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5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105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특례
	제106조의2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재정정책으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농어업인의 복지, 보건의료,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고 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의 피해 보전 및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둘째, 면세유 혜택이 도서지역의 자가발전 시설 운영자들에게 집중됨으로써, 같은 지역 내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존재할 우려가 있음.

전력망이 연결된 일부 도서지역 주민들은 이미 일반 전력 요금을 지불하고 있어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자가발전 시설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면세유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전력을 생

산할 수 있어 같은 지역 내에서도 전기요금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발전 사업자들은 면세유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운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어 자가발전 운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음.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는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4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17억원 등 2027~2030년까지 4년간 총 68억원(연평균 1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부가가치세	△5	△5	△5	△5	△20	△5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11	△11	△11	△11	△44	△11
교육세	△1	△1	△1	△1	△4	△1
합계	△17	△17	△17	△17	△68	△1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2025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25년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이었던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1년만 연장하였음.

정부는 당초 3년 연장안을 제출하였으나 논의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1년만 연장하되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로 하여금 화석연료에 대한 세제감면 제도의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같이 의결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7

□ 자가발전 석유류 공급주체

- 회원조합이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수협중앙회에서 공급 받은 석유류를 도서지역에 직접 공급

□ 자가발전 주체

-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주체이며, 면세유 공급대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자가발전 석유류 관련 수협의 역할

- 중 앙 회 : 회원조합으로부터 자가발전 석유류 공급신청 접수
해양수산부에 공급물량 신청, 회원조합에 면세유류 배정
- 회원조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가발전 석유류 공급신청 접수
관할 도서지역의 자가발전 시설에 면세유 직접 공급

□ 자가발전된 전기를 누구에게 공급하는지

- 도서지방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전기를 공급

순서	업무 내용	세부 업무 절차	비 고
①	공급요청	지자체는 관할 도서의 자가발전 시설에 대해 수협(회원조합)에 면세유 공급요청	
②	유류카드 발급	수협은 공급 검토 후, 자가발전시설에 대해 유류카드를 발급	
③	면세유 공급	수협은 지자체의 면세유 신청에 따라 연간 소요량 이내에서 출고지시서를 발급 지자체는 출고지시서를 근거로 수협급유소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음	
④	대금정산	수협은 면세유 공급증서를 근거로 지자체에 면세유 공급 대금 신청 및 정산	